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2. 08. 30. (화)	담당자	권주리 사무국장 상담원
서울시 영등포구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범죄자로 수사, 기소하고
보호처분까지 한 검·경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합정수사를 통해 발견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수사기관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상의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상의 피의자(성매매광고행위)로 조사됨은 물론, 결국 기소되어 보호처분 된 사건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경기)로부터 제보 받았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모아’ 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처분 결정 한 △△가정법원에 항고하였고, 2022년 5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명한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였고, 원심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항고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각하하였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모아’ 센터는 아청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합정수사를 통해 검거된 아동·청소년을 기소할 수 없게 되자 성매매처벌법상 광고행위로 입건, 기소하는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사회는 정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피해자로 보호하도록 법이 바뀌자 기소할 수 있는 온갖 법률을 다 찾아내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법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기소한 것입니까? 수사기관이라면 최소한 개정된 법률이 어떤 취지로 개정되었는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했는지 알아야 하고, 그 입법취지에 따라 수사, 기소하여야 하며 재판부 역시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기소되었다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모아’ 센터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기는커녕 함정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처벌하기 위해 ‘성매매처벌법’을 적용, 기소하고, 법원 역시 보호처분까지 내린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검·경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이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오니,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제공, 사이버포래상담원 양성과 지속교육, 아동·청소년/인터넷/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 및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서울)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경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진행과정, 시사점 등을 아래와 같이 밝히오니,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건 경과

1. 2021년 X월 X일, 경기 OO경찰서 수사관은 그 동안 해왔던 수사관행대로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채팅앱에서 함정수사를 하였다. 수사관은 조건만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린 사건당시 만 15세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였고, 발견 당일 바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였다.

2. OO경찰서 수사관은 ‘아청법’이 개정되어 만 15세인 피해 아동·청소년은 당연히 피해자로 보호하여야 하나, 오히려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광고 혐의로 피의자** 신문하였다.

3. 2021년 X월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처벌법’ (성매매광고) 위반으로 기소되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4. 2022년 4월 △△가정법원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1, 4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다.

5.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있던 ‘모아’ 센터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이 사실을 제보하여, 2022년 3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모아’ 센터와 함께 수사기관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고, 범죄가담자로 보고 있는 인식과 잘못된 수사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가정법원에 항고 및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진행과정

일자	내용
4월 XX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1, 4호 보호처분 결정]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가정법원 출석,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위탁),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 결정
4월 XX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항고장 △△가정법원 접수] - 피해 아동·청소년 변호인 서유진 변호사
4월 ~ 5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작성]
5월 XX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 △△가정법원 접수] -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인의 대리인: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배수진, 한육, 김병희, 김수현, 최석봉, 추선희 변호사, 피해아동·청소년 변호인 서유진
6월 XX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처분집행감독 사건 불처분 결정]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가정법원 출석, 보호처분집행감독 건 불처분 결정
7월 XX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
7월 XX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각하]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각하의 시사점 및 향후계획

△△가정법원은 6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성매매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처분을 명한 원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결정을 취소, 불처분하고, 7월 항고를 기각하였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본안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이 확정되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7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또한 각하하였다.

△△가정법원의 위와 같은 일련의 결정은 그동안 소년사건을 지원하던 경험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과정이었다. 헌법소원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과정으로 항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결정을 취소해버리고, 항고 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각하한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법률 대리인, ‘모아’ 센터 모두를 허탈하게 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이 법의 허점을 이용, 잘못된 법을 적용하여 당연히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기소까지 한 사건으로 법의 허점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다루어 바로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바로잡아야 할 법률의 허점을 원결정 취소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통해 재판의 전제성 자체를 부존재 시킴으로써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원천봉쇄시켜 버린 것이다. 우리 십대여성인권센터와 법률 대리인, ‘모아’ 센터는 △△가정법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법의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직접 헌법소원을 하기를 내심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이례적인 과정을 통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되는 원결정을 취소함으로써 헌법소원을 통해 다룰 기회까지 차단시켜버린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법률적용에 대해 매우 중요한 판결이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다시는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아동·청소년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취소는 수사기관에서 합정수사를 통해 검거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광고행위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이 잘못된 법적용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기보다는 기소였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합정수사를 즉각 중지하고, 발견 즉시 피해자로 보호하라.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다시는 ‘성매매처벌법’ (성매매광고) 위반으로 수사·기소하면 안된다.

2.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자발/강제 구별없이 모두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아청법’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수사기관은 여전히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보고 수사, 기소하고 있어 위 사건 피해 아동·청소년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제보되고 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을 감시, 법적 대응함으로써 개정된 ‘아청법’이 제대로 작동하여 우리 사회가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십대여성인권센터